제 2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의신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**2016년 12월 05일**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김**	김** 1969-09-03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평길	재등록
김**	김** 1974-10-06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길	재등록
김**	김** 1977-02-28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도명길	재등록
이**	이** 1977-06-15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원다길	재등록
정**	정** 1980-02-21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군길	재등록
김**	김** 1981-01-05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길	재등록
임**	임** 1982-07-25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활곡길	재등록
김**	김** 1982-10-12	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원다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배정숙 문의전화 : 061-540-6672)

2016년 11월 22일

의신면장